

# 정보공개법 추진현황과 내용

The Prospect and Contents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Law



**김중양**  
총무처 능률국장  
Kim, joong-yang/Director general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Bureau,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오** 늘날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말미암아 정보의 대량축적과

신속한 유통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스웨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1개 국가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 단계로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하여 1994년 7월 1일 부터 각급 행정기

관에서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어쩌든 정보공개제도는 민주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선거시 각 당이 공약사항으로 내건바 있다. 정보는 그동안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개법 시안을 마련해서 1994년 12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12번째로 입법국가로 되며, 아시아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하는 국가로 될 것이다.

정보공개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이 법의 내용이 우리의 법률문화 및 법률체계 그리고 우리의 행정여건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그동안 제지되었던 공법학회안(1989), 한국행정연구원안



(1992), 경실련안(1993) 등을 비교·평가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알권리 충족이라는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치우친 나머지 공공업무수행의 비능률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다. 1994년 12월 21일 공청회때의 정부시안에 담겨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이 포함된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부의 정보공개가 주된 것이어서 당초 법안을 “정보공개법”이라고 시안의 명칭을 변경했다.

둘째, 정보공개 청구권자 문제인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게 된다.

셋째, 비공개정보의 범위문제이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은 각국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익에 관한 정보, 공익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의 사적비밀이나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시안에서는 9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넷째, 정보공개절차인데 정보공개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다섯째, 불복구제절차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청구인은 ① 해당관청에 이의신청하거나 또는 ②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사청구 하거나 또는 ③ 직접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세가지 방법을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다. 금융실명제가 본디 흐름을 낱낱히 밝혀내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제도는 정책의 형성 집행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명제라고 비유되기도 한다. “국민의 정보(Popular Information)가 없고, 정보를 얻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국민의 정부(Popular Government)란 광대극이거나 비극 또는 그 양쪽일 것이다” 라는 제임스메디슨의 말 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시안의 내용을 보다 다듬어 금년 국회에서, 입법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DC

